

# 14.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요령

자료제공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제1장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신고대상

### I.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기술자격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기술계)
  - 학력·경력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미소지자로 건설기술관련학과 졸업자
  - 경력자 :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자로서 건설관련업무 종사자
- 임의신고자 :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건설관련업체외의 업체에서 건설관련업무 종사자
  - 기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기능사 및 외국인 등)

### II. 건설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시기

#### 1. 신고의무자

-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건설기술

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력을 신고(일제신고)하여야 하며, 소속업체에의 입·퇴사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제대 등으로 처음 건설관련업체에 취업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사의 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확대 되어 추가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 건설기술자는 '98.7.31까지 자신의 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추가된 기술분야 및 종목

기계분야(용접, 일반기계)· 금속분야(비파괴검사)·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자분야(공업계측제어)· 토목분야(철도보선)· 광업자원분야(화약류관리, 광산, 광산보안, 시추, 석재)· 안전관리분야(산업안전, 소방설비)· 산업응용분야(공정관리, 승강기)

-추가된 건설관련 업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산업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석도설치공사업, 가스시공업(제1,2,3,4,5종), 특정열기자재시공업(제1,2,3,4,5종), 온돌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는 입국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2. 임의 신고자 : 수시 신고

### III.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준

#### 1. 건설기술자의 범위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분야 \ 등급	기 술 사	기 사 1급	기 사 2급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금 속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 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 축 의 장	건축설비 건 축 의 상

기술분야 \ 등급	기 술 사	기 사 1급	기 사 2급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 산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시 추 석 재	광 산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시 추 석 재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 경 측 지	도시계획 조 경 측 지	조 경 측 지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정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승강기
교 통	교 통	교 통	

#### 나. 학력·경력자

아래 표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관련업무에 종사자

분 야	학 과 명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계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분 야	학 과 명
금 속	금속관련학과
전 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 자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지적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임업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 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리학과, 공업경영학과
기 타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것임</li> <li>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을 말하며, 동일 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li> </ol>

분 야	학 과 명
비 고	<p>3. 위 표에서 2개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관련학과는 해당분야를 상호 인정하며, 기타 분야는 감사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4.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등을 감안.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p>

#### 다. 경력자

건설기술관련학과의 학과졸업후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인정방법은 검토 중에 있다.

## 2.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li>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고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중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초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li> <li>·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건설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li> </ul>

#### 비 고

-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나.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다.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의 군복무를 한자를 말한다.



### 3. 외국인 기술자의 인정 방법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은 내국인 건설기술자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한다.

### 4. 감리원의 신고

- 건설기술경력증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2제5항에 따라 감리원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감리원도 신고의무자이며, 감리전문회사도 보고 의무 대상업체임.

## IV.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의 업체를 말한다.

- ① 일반건설업자
- ② 전문건설업자
- ③ 주택건설등록사업자
- ④ 감리전문회사
- ⑤ 건축사무소(대한건축사협회)
- ⑥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⑦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 ⑧ 측량업자
- ⑨ 시설안전기술공단
- ⑩ 안전진단전문기관
- ⑪ 유지관리업자
- ⑫ 품질검사전문기관
- ⑬ 건설안전점검기관
- ⑭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제2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요령

### I.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작성요령

####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서류

##### 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기술등급산정 및 P.Q 또는 P.P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기술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나. 경력확인서

- '95.10.12 이전의 경력은 별도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력신고서에 작성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음.
- '95.10.12 이후의 경력은 경력확인서에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경력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을 접수하되 기술등급산정 등에서 기술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 ※ 추후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본사경력과 현장기술경력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다. 졸업증명서 원본

##### 라. 기술자격증 사본(소지한 자격증 모두)

##### 마. 교육훈련 및 상훈 입증서류(사본 또는 원본첨부)

##### 바. 증명사진 2매(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 사.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청서

##### 아. 등록비 및 연회비 납입영수증 사본

#### ▷ 신고서 작성요령

##### 가. 인적사항

-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② 학력 :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를 기재하고 학위란에는 학위 또는 졸업여부를 기재하고 졸업증명서 첨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신대학부터 기재)
- ③ 거주지 : 현재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
- ④ 근무처 이력 : 근무기간을 연·월·일로 기재하고, 회사명·업종·면허번호를 기재  
\*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의장공사업,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사업등록업, 유지관리업, 측량업 등으로 기재
- ⑤ 기술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중 자신이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기재(기술분야 표준분류표 12쪽을 참조하여 기재)
- ⑥ 기술자격 : 본인이 취득한 모든 건설분야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자격증사본 첨부
- ⑦ 교육훈련 : 최근에 이수한 건설분야 교육훈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료증명서사본 첨부
- ⑧ 상훈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기재하고 증명서사본 첨부

#### 나. 기술경력

- ① 참여기간 : 해당사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재(본사경력과 구분 작성)
- ② 참여사업명 : 실제 참여한 사업명을 기재( 본사경력과 구분 작성)
- ③ 발주자 : 해당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이나 단체를 기재  
\* 하도급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기재
- ④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는 기술등급, 업면허와 P.Q 또는 P.P 등 입찰에 참여할 때 활용되오니 기술분야 표준분류표의 실제 참여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⑤ 공법 : 해당사업에서 실제 적용한 공법(NATM, 사장교, T.B.M 등)을 기재
- ⑥ 직위 : 해당사업 참여당시 소속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 2.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작성요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한 후 이미 신고된 경력내용 이외에 소속회사 또는 참여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95.10.12 이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 변경신고를 해야함.

#### 가.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기술경력과 본사경력을 구분하여 작성)

#### 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사항

- 경력신고를 한 후 상급학교를 졸업한 경우 또는 미신고 학력의 추가 신고는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됨.
- 새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미신고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사본을 제출하면됨.
  - \*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전산자료는 변경신고 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됨.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기술자격수첩의 해당부분 사본을 제출하면됨.
  - \* 관계법률에 의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상벌사항, 부실벌점 및 감리원 현황 등에 의한 신고는 변경신고 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됨.
-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에 기술자 본인의 서명과 제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소속회사에서 입·퇴직 등 근무이력을 확인한 경우 건설기술경력증의 해당부분을 사본하여 제출하면됨

▷ 변경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서 작성요령과 동일

### 3. 경력확인서 작성요령

#### 가. 경력확인서의 작성

- '95.10.12이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해야함.
- 경력확인서의 작성은 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소속회사의 상호 업종 및 면허번호, 근무경력, 기술경력을 확인 후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날인하면됨.
- 근무경력 : 별지 제56의2호서식 경력확인서(근무처확인용)를 작성하여 소속회사의 장(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서 첨부해야함.
- 기술경력 : 별지 제56의3호서식 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용)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소속회사의 장(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첨부해야함.

\* 공사참여 기술경력 기재요령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작성요령과 동일하며, 본사경력과 현장기술경력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95.10.12 이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속회사의 경력확인서(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됨.

- 사직서를 첨부한 내용증명
- 국민연금 가입(탈퇴) 또는 의료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
- 근무사실 등 확인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서류
- 자영업일 경우

행정기관의 인가·허가·등록 면허 등에 의하여 설립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 및 갑근세증명서 중 택일하여 첨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중 1인이상이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다. 소속회사에서 퇴직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내용증명서상 사퇴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퇴통고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만료일을 퇴사일로 처리되며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법 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대법원 판례 등)

#### 4. 기술분야 표준분류표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대분류	소분류	
기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도로	토공	계획 조사 측량 연구 건설기술 정보처리
		고속도로	비장, 방수	
금속	비파괴검사	교량	석공	
		공항 댐	도장 조적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대분류	소분류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간척·매립 농지개량	비계·구조물해체 지붕·판금	시공 공사감독
전자	공업계측제어	항만·관개수로 철도	철근·콘크리트 철물	시험 검사
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토목설계 토목품질시험	지하철 터널 단지조성 택지개발 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산업시설 환경시설 저장·비축시설 준설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물해체 창호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안전점검 설계 설계감리 정밀안전진단 감리(건축사법) 책임감리(건설 기술(관리법)) 유지관리 시설물철거 건설장비시운전 사업관리 자재의 구매 및 조달
		상수도(정수장) 하수도 공연·집회시설 관람장(운동경기) 전시시설(전시장) 공용청사 공동주택 송전 변전 기타	온실설치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은돌시공 시설물유지관리 측량 지도제작 화약관리(발파) 기타	건설장비시운전 사업관리 자재의 구매 및 조달 공사견적 화약관리 강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환경관리 품질관리 기타
광업자원	광산/화약류관리 광산보안/시추 석재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측지			

안전관리	산업안전/건설안전 소방설비			
환경	대기관리(대기환경) 수질관리(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정관리 승강기			
교통	교통			

- \* 위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류내용에 준해 기재하거나 기타 사항으로 본인의 경력을 간략하게 기재하기바람.
- \* 공사종류란에는 본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에 따라 대분류, 소분류를 모두 기재하거나 대분류 또는 소분류 하나만을 기재해도됨.

### 5. 기술경력 작성 예시

가. 건설기술자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표기를 위하여 신규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는 기술분야란에 건설기술 12개분야(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관리, 환경, 교통, 금속, 전기,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기타)중 1개 분야명 및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를 각각의 경력별로 전부 기재하고,

나. 기신고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기술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를 기재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됨.

#### 다. 기술경력 작성예시

- ▷ 기술분야란에 12개분야(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안전, 환경, 교통, 금속,전기, 전자, 광업자원, 산업응용, 기타) 중 1개 분야 및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를 표기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사 종류	담당 업무	공법	직위
1	83.9.10 ~84.1.1	본사/토목부	-	토목	토목	-	계획		사 원
2	84.1.2~ 85.12.30	00지역 군막사공사	국방부	건축	건축시공	기타 (군사설)	공사 감독		사 원
3	86.1.1~ 87.5.31	00지역 시설공사	건설 교통부	토목	도로 및 공항	도로	공사 감독		대 리
4	87.5.30 ~87.6.30	본사/토목부	-	토목	토목	도로	연구		대 리
5	87.7.1~ 87.7.7	본사/토목부	-	토목	토목	도로	공사 견적		대 리
6	87.7.8~ 88.5.31	00한강대교 시설물관리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기계	일반기계	교량	유지 관리		과 장
7	83.6.1~ 87.7.1	본사/건축부	-	건축	건축설비	공동 주택	계획		과 장
8	83.7.2~ 89.12.31	00교량안전 진단	서울시	안전	건설안전	교량	정밀 안전 진단		과 장
9	90.1.1~ 93.6.30	000주변 가로수식재	서울시	국토개발	조경	조경	현장 시공		과 장
10	93.7.1~ 93.7.31	본사/공무부	-	안전	소방설비	공용 청사	공사 견적		부 장
11	93.8.1~ 현재	본사/공무부	-	토목	토목	고속 도로	설계		부 장

\*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분야는 기술분야 표준분류표에서 선택 표기

\* 전문건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사종류란에 대분류, 소분류를 모두 기재



## II. 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요령

외국인이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준하여 한국어(영문혼용)로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와 우리나라에서의 해당 학력 학과 및 자격을 주재국 한국어영사 이상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을 받은 서류 및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됨.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자국의 “경력확인서”
- 졸업증명서(해당국가)
- 기술자격증 사본

## III. 기신고 자료의 경정

건설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신고한 이후에는 신고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신고된 자료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시 기술자 본인이 직접 협회를 방문하고 정정사유서를 제출해야함.

-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국가기관이나 발주청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력사항
-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경우
- 착오, 위산, 오기 등의 경우(직권처리)

## IV. 건설기술경력증 및 제증명 발급

### 1. 건설기술경력증 신청 및 발급

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갱신·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최초발급시 수수료 없음)하고, 협회는 건설기술자

에게 건설기술 경력증(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함.

- 나. 건설관련업체에서 소속건설기술자의 경력증 신청 및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장이 소속기술자의 연명부를 작성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2. 제증명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등

### 가.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수료 납입영수증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수료 납입영수증

- P.Q 및 입찰제안서(P.P)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의 경력확인서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P,PQ)확인신청서

- 수수료 납입영수증

- \*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은 건설공사 전문분야 또는 공사종류별로 발췌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나. 협회에 경력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한 후에 제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에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나 소속회사 변경, 참여사업명 추가 기타 변경사항(자격증취득, 교육이수)이 있을 때에도 먼저 “건설기술자 경력변경 신고”를 한 후에 제증명을 신청해야 함.

- 다. 제증명 발급신청은 우편, FAX또는 PC통신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 및 발송우편료를 무통장입금 또는 소액환으로 송금하면 됨.

## V. 수수료

### 1. 등록비 및 연회비

회비구분	의무신고자		임의신고자(외국인 포함)		
	특급기술자 (기술자)	고급·중급·초급 기술자 (기사1·2급, 학력·경력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설관련업체 비건설분야 종사자	기타 임의신고자
등록비	70,000	70,000	70,000	기술등급 또는 자 격에 따라 적용	70,000
연회비	50,000	30,000	50,000		30,000
(경력 관리비)	(40,000)	(24,000)	(-)	(-)	(-)

### 2. 제증명 발급수수료

증명서	단위	수수료	비고
건설기술자 경력증	1부	무료	재발급시 8,000원/1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3,000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당/10명	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수수료 7,000원</li> <li>· 10명초과 인원은 1인당 500원으로 하되 상한금액 30만원</li> <li>· (예) 12명 2부 신청시 : 8,000×2부 = 16,000원</li> </ul>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1인당	3,000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징수기준 적용

## 제3장 건설관련업체의 보고

### I. 건설업체의 반기 보고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자 취업·퇴직상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매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제17호서식으로 보고해야함.

#### 1. 보고요령

##### 가.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 기존의 건설관련업체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소속 전체건설 기술자현황을 작성하여 최초 보고해야함.
- 전체 건설기술자현황을 최초 보고한 업체는 건설기술자가 새로 취업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취업 및 퇴직상황을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반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나. 보고 대상 건설관련업체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관련엔지니어링회사, 건설관련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대한건축사협회에 보고), 측량업자, 시설안전기술공단,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다. 추가된 건설분야(종목)근무자의 건설관련업체 보고

- 관련법령 개정으로 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업체는 추가된 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추가된 건설 관련업체는 전체건설기술자 현황을 해당반기 다음달까지 최초보고 해야함.

-추가된 건설기술분야(종목) : 기계(용접, 일반기계), 금속(비파괴검사), 전기(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자(공업계측제어), 토목(철도보

선), 광업자원(화약류관리, 광산, 광산보안, 시추, 석재), 안전관리(산업안전, 소방설비), 산업응용(공정관리, 승강기)

-추가된 업체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산업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공업(제1,2,3,4,5종), 특정열기 자재시공업(제 1,2,3,4,5종), 온돌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라. 소재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 요령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문서로 보고해야함.
- 변동사항 보고시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일 경우)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을 첨부해야함.

### 2.보고시기 : 매 반기 익월

-1월~6월은 7월말일까지 보고

-7월~12월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

### 3. 작성요령

가. 보고자는 업체의 현황을 기재 및 업체의 직인을 날인한 원본 제출

나.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담당업무를 기록해야함.

- \* 담당업무 : 계획, 조사, 측량, 연구, 건설기술정보처리,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감리(건축사법),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유지관리, 시설물철거, 건설장비시운전, 사업관리, 자재의 구매 및 조달, 공사견적, 강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환경관리, 품질관리, 화약관리 기타

## 제4장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 1. 교육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과 같음.

-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체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다.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아. 법 제 46조의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자.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 2. 교육비부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3항에 의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3. 교육기간

가. 교육훈련주기 : 매 3년마다 1회 이상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97.12.31)이전에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동법시행령 시행이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5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다. 종류 및 등급에 따른 교육기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제 3조)

- 1) 자격취득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 2주 이상
- 2) 기술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14시간 이상
- 3)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은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14시간 이상
- 4)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1주 이상

#### 4.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연락처)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을 확대·지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종합교육기관(5)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건설기술 교육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7	(032)463-4900~2	기술계건설기술자, 학력·경력자, 감리원
건설산업 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9-1	(02)394-7200	학력·경력자 및 학력·경력자, 감리원
충청 건설 교육협의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2)3449-8814	기술계건설기술자, 학력, 경력자, 감리원
건설 기술 호남교육원	광주시 서구 매월동 609-7	(062)374-5000	기술계건설기술자, 학·경력자, 감리원
영남 건설 기술교육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28-3	(0523)83-0951	"

• 전문교육기관(21)

기 관 명	위 치	전화번호	교과과정
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	(0343)80-3171	안전진단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0343)20-3271	농어업 토목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0342)738-3085	주택공사관리, 건축구조설계 건축설비설계·시공(기계, 전기) 지반재해예방기술
한국토지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2	(042)866-8541	연약자반개량,매립 및 준설,택지 개발실무, 도시계획 및 조경실무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02)3456-5558	전력설비 건설시공 관리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02)581-5711	건축설계, 건축관련법규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31	(02)569-6029	토목 및 건축 건설감리
대한측량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영등포유통센터6층 714호	(02)671-2939	측량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02)8476-114	열사용기자재시공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44-34 건축회관2층	(02)583-3673	공기조화, 위생설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1 남양빌딩	(02)3458-5826	가설기자재관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2-7	(032)667-4191	건설안전관리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02)773-5901~3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교통협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9-5 구삼빌딩 4층	(02)552-5871~3	도로·교통공학
대하토목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50-7	(02)407-4115	기초지반, 터널구조 및 콘크리트
한국콘크리트학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충회관신관 807호	(02)568-5985	콘크리트기술
한국건설경영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계리제센타 A동 902호	(02)568-0143	건설사업관리,건설디자인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5-6	(02)3401-8388	건설방식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6 용칭빌딩 5층	(02)501-5561	건설품질관리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6-6	(02)830-8234~6	건축 및 토목 품질시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537-10	(02)588-2162	적산

주택회보